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2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윤준병 · 김교홍 · 이성운
박희승 · 장철민 · 신정훈
민병덕 · 주철현 · 박홍배
박 정 · 송옥주 · 김윤택
서영교 · 김우영 · 서삼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이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 부영양화 및 빈삭수괴발생 등의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수질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새만금보다 앞서 추진된 시화호의 경우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으로 해수호로 전환한 결과 ‘생명의 갯벌’로 다시 회복한 사례가 있음.

이에 새만금호 역시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해수호의 효과적인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호소”를 “해수호, 호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새만금방조제로 둘러싸인 내측의 해역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새만금사업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 해수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만금사업지역의”를 “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새만금사업지역에서”를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 해수호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새만금호의”를 각각 “새만금 해수호의”로 한다.

제35조제13호 중 “새만금호를”을 “새만금 해수호를”로 한다.

제36조의4제3항 전단 중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새만금호를”을 “새만금 해수호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u>호소</u> (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 ----- --- <u>해수호, 호소</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 <u>새만금호</u> ”란 <u>새만금방조제</u> 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	5. -- <u>새만금 해수호</u> ----- <u>새만금</u> <u>방조제로 둘러싸인 내측의 해역</u>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u>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훼손</u> 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 <u>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 해수호는 제외한다)</u> ----- ----- ----- ----- -----.
② 환경부장관은 <u>새만금사업지역의</u>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	② ----- <u>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u> -----

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④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 해수호를 포함한다)에서-----

-----.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

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 계획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
급받는 자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

1. 새만금 해수호의-----

2.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
1. <u>새만금호의</u>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1. <u>새만금 해수호의</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u>새만금호를</u> 이용한 수익사업	13. ----- - <u>새만금 해수호를</u> -----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② (생 략)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u>새만금호</u>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③ ----- <u>새만금 해수호</u> ----- ----- ----- ----- ----- -----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략)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8. (생략)

②·③ (생략)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방조제·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새만금 해수호를-----
-----.

-----.

7.·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

새만금 해수호-----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u>새만금호</u>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 ----- ----- ----- ----- <u>새만금 해수호</u>----- -----. ②·③ (현행과 같음)
---	--